

의안번호	2209543
의 퇴 인	김소희 의원
회 답 일	2025. 5. 29.
추계번호	25F204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상생적 산업재해예방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0조의33 (상생적 산업재해예방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)	○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협력업체 등에 지출하는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 － 공제율(%): 중소기업 12, 중견기업 6, 대기업 3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0조의33 (상생적 산업재해예방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협력업체 등에 지출한 금액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경우,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(안 제100조의33 신설)
 - 공제대상: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업체 등에 지출한 금액
 - 공제율(%): 중소기업 12, 중견기업 6, 대기업 3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협력업체에 지출하는 비용의 구체적인 범위와 해당 비용의 지출 현황을 바탕

으로 향후 지출액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
- 개정안에 따라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협력업체에 지출하는 비용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
 - 현행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는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, 유해 위험방지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, 개정안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출 범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항이 포함될지 여부는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음
- 또한, 기업의 기업규모별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, 협력업체 등에 지출하는 비중 등의 현황과 관련한 정보가 필요하나, 해당 자료가 부재하여 향후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 협력업체 등에 지출하는 금액 및 개정안에 따른 공제발생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현재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지출 관련 통계는 「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」에서 조사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통계가 있으나, 건설업에 한정하여 집계되며 산업 안전보건 관리비 중 협력업체에 지출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조사하지 않아 향후 공제대상인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 협력업체 등에 지출하는 금액을 추정할 수 없음
 - 참고로, 「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」(2023.8.)에서 조사된 건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지출액 평균은 8억 7,436만원이며, 항목별로 살펴보면 안전 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

[표 1]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항목별 비중

(단위: %)

	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수당	안전 시설비 등	안전장구 구입비 등	안전 진단비 등	안전보건 교육비 등	근로자 건강 관리비 등	건설재해 예방기술 지도비	본사 사용비
전체	38.6	26.2	19.9	3.9	3.9	3.7	2.9	0.9

자료: 산업안전보건연구원, 「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」, 2023.8.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